〈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뽕도리신』정보공개서

(주)디알오에프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디알오에프 가맹사업본부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가맹사업법」이라 칭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 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전보고에다		개서 등록 번호	20210949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및 최종 등록일		정보공	개서 최초 등록일	2021년03월31일
<u> </u>	시스 이국의 첫 시아 이국의		개서 최종 등록일	2024년01월08일
	『(주)디알	오에프』가밍	생본부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 관약	낚구 신원로 40-9,2층 1	2호(신림동)
전화번호	-		팩스번호	
가맹사업 담당부서	가맹사업부		담당자 전화번호	비공개
홈페이지	bbongdori.cityfood.co.kr		담당자 이메일	nikes1114@naver.com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 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 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 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 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 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정보마당"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중인 경우에는 실제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 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는 정확한 내용 및 별첨 서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는 당사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주)디알오에프	영업표지		÷	뽕도리신
주 소	서울 관악구 신원로 40-9,2층 12호(신림동)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	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2년10월05일	2022년10월07일	김 무창	비	공개	-
법인등록번호	110111-8441737	사업자등록	번호	76 ⁻	1-86-0262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서울 관악구 신원로 40-9,2층 12호(신림동)			
대표 (이사)	김무창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1)	(5)74)		HH = 31.11	김무창	비공개	-
	뽕도리신	서울 관악-	구 신원로 40-9,2층 12	호(신림동)		
사용인 (감사)	박병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6*4)			김무창	비공개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기업 을 인수함	뽕도리	"뽕도리신"	2022년 11월0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65번길 28,101호(인계동)	김무창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뽕도리신	
상 호	<u> 뽕도리신 000 점</u>	
상표(서비스표) (입간판용) 광고 그밖의 영업표지	الاعتام	2021년08월26일 등록 (4017680920000)

- 5. 정보공개서 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2021년	해당사항없음					
2022년	15,719	6,946	8,773	0	-1,412	-1,226
2023년	26,582	14,115	12,466	75,860	4,301	3,693

- 2) 당사의 바로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 ☞ 1)항과 같습니다.
- 6. 가맹본부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관련여부			기간	재직 회사 및 직위	담당 업무	
	71 [7]		2021년03월15일- 2022년10월31일	뽕도리 대표	- 회사업무 총괄	
가맹사업 김 무창 관련임원	대표	2022년11월1일-현재	(주)디알오에프 대표			
	박 병진	감사	2022년11월1일-현재	(주)디알오에프 감사	회사업무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 (명)		직원수(명)
2023년12월31일	1	1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영
특수관계인	뽕도리/ 김 무창	가맹사업	2021년03월15일- 2022년10월31일	뽕도리신(등록번호: 20210949)라는
(임원)	㈜디알오에프/ 김 무창	경영	2022년11월01일- 현재	영업표지의 중식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여 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등록신청 자)	존속기간만 료일(가맹 본부의 사용기간)
K ² S)°	가맹점 상호,영업표 지, 실사, POP등으로 사용	2021년 08월26일 등록	출원번호 40202001 43276 등록번호 40176809 20000	이현수	2031년8월 26일

- ☞ 지식재산권 상표 를 권리**자** 이 현수 으로 로부터 지식재산권 출원일로 부터 지식재산권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가맹사업에 사용하는 계약를 체결 하였습니다.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상기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 하여야 합니다.
- ☞ 상기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뽕도리신 를 시작한 날 : 2021년 3월 1일 (직영점를 시작한날 : 2021년03월15일)

2. 『뽕도리신』 연혁

☞ 『**뽕도리신**』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 해당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뽕도리	뽕도리신 김-	김무창	2021.3.52022.10.3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65번길 28,101호(인계동)
(주)디알오에프		台下 で 「	2022년11월01일-현재	서울 관악구 신원로 40-9,2층 12호(신림동)

3『 (주)디알오에프신 』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뽕도리신	중식	짬뽕,짜장,탕수육	

4.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전국 및 광역 지방 자치단체별 『뽕도리신』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개)

지역	:	2021.12.3	1	2022.12.31			2023.12.31		
시키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4	3	1	4	4		3	3	
서울							1	1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1	1	1				
강원									
충남	3	3		3	3		2	2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바로전 3년간 『뽕도리신』가맹점 수

(단위 :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0	3	0	0	0	3
2022	3	1	0	0	0	4
2023	4	1	1	1	0	3

6. 『뽕도리신』 외 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산정기준

	2022		2023년	가맹사업자 연	연간 평균 매출	·액(천원)		
지역	2023 년말	연간 평균	연간 평균매출액		연간 평균매출액(상한)		연간 평균매출액(하한)	
	가맹 점수	연간 평균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비고
전체	3	144,406	4,868	253,218	14,895	50,000	1,563	
서울	1							5곳미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2				5곳미만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 『뽕도리신』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로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수	평균 영업기간 (단위:일)
2023년12월31일	3	753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정보

☞ 당사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지역총판) 및 가맹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고 있으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설치할수 있습니다..

10. 광고. 판촉비 지출내역

☞ 직전 사업연도 말『(주)디알오에프』와 관련하여 지출한 광고비 는 없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출 비용(단 ,부가세미도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_		9,547	9,547		
광고	비공개	비공개	9,547	9,547		

11. 가맹금 예치

☞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 서울보증보험" 과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고
보험인	㈜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주)디알오에프	
피보험인	가맹점 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 과한 날 또는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개시일 까지)	
보험금액	예치대상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보상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가맹본부경유-보험회 사 접수-보험회사 조사-지급여부 결정-보험금 지급	평균5개월소요

※ 당사는 귀하에게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증권을 교부하고 귀하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수령 합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 「약관의 규제에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등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가맹사업법」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 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뽕도리신』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기타 정한 품목 외 별도 구입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예치대상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입회 가입비	5,500	계약체결시	계약체결 후에는 반환되지 않으나 가맹사업법 제10조의 경우 일부반환 가능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경과 또는 영업개시일 이후, 예치금 인출후 에는 반환불가
개점전 교육비	3,300		교육시작 10일 이전 계약해지시	교육개시후	
개점 행사비	2,200		영업개시 10일 이전 계약해지시	영업개시후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 당사는 보증금를 받지 않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법」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비고
합계 11,000		
입회 가입비	5,500	가맹점운영권 부여댓가
개점전 교육비	3,300	서비스/운영교육, 레시피
개점 행사비	2,200	전단지등 홍보물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장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당금액	지급 기한	비고
합계	-	113,300	3,777	-	99㎡ 기준시 부담액
간판		8,800	293	공사7일전	규격,재질,수량,설치환경등 에따라 부담액 상이함
필수설비(홀설비 가구,비품,주방설 비등)	가맹본부	44,000	1,467	설치7일전	영업장의 규모 및 형태 등 에
내부인테리어		59,400	1,980	공사7일전	따라 부담액이 상이함
초도공급상품		1,100	37	물품주문시	주문량에 따라 상이함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시장조사 및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구입시기,설치 기간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내역 및 지급대상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그 밖의 비용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관리 감독 준수 : 인테리어, 간판 등은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제공하는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는 직원의 파견, 정보제공,도면제공,검수 활동 등을 통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합니다.
- (2) 필수 구입 내역 : 필수설비 및 초도물품 일체는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 에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당사가 지정하는 일부 품목은 자체 구입 시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3) 그 밖의 철거, 영업신고, 사업자 등록발급, 전화 개설, TV 설치, 인터넷가입 배관공사, 가스공사, 오픈행사, 전기승압공사, 후드입상등에 따른 비용은 귀하가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위의 모든 비용은 시공 및 구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당사 또는 귀하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반환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 입지예정지 선정→현지 점검 및 조언→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가맹희망자가 입지예정지 선정전에 지역, 상권 입지에 대하여 조언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운영경험 및 그밖의 know-how을 활용하여 조언및 자문에 응합니다)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 시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당사에 책임 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에 조언을 요청하는 경우 조사 및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 및 분석 에 착수하기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계약·채용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만19세 이상으로 보건증 소지자 일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가맹점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름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방법 ㆍ공급업체
- ☞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 위 내역 이외의 별도시공 내역은 귀하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 한편 귀하는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전부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부담
 - ☞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장 8항)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 (로열티)		월매출액의 2%	다음 월 5일까지	없음	영업표지 시 가맹점 관리 포함한 금 ^및 반환 불가	비용을	지정 매월	계좌로 자동이체
상품/판촉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자세한내용	}은∨장 8항	참조		집행후에는 불가		
개점후 교육훈련비		별도통보	교육개시 7일전	교육개시 3일전 철회시	교 위 반환	유후 불가		
점포환경개선비 용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나머지			가맹본부의 배한 지원 장			
POS 사용료	가맹본부 가지정하 는 업체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	고계약	시스템 진 반환	<u>관</u> 리비로 불가	종료	[약기간 전 철회시 ᆤ금 부담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 다음날부 지급하는 닐	터		가맹점 사업 지급기한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 및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항목 변경 및 항목 추가, 와 인상 또는 인하 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담해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요구에 의하여 점포을 이전할 경우 그 이전비용은 해당사유를 감안하여 귀하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과정의 부담

- □ 귀하가 운영하는 『**뽕도리신**』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귀하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승인을 얻은 양수인은 1개월 이내에 당사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에 따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양수인의 부담으로 개점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은 양도조건 등에 따라 당사에 개점 전 교육비, 보증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의 경우 양수인은 당해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맹금등 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종료 후의 조치 사항

- ☞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당사에 대한 채무 전액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영업표지나 노하우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영업표지 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 · 비품 · 집기 및 당사의 모든 영업비밀자료(매뉴얼 및 제공서류 및 자료 등)등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철거 또는 반납하여야 하고 원상회복 해야 합니다. 이때 철거· 원상회복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가 철거 ·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당사가 직접 철거 회수등· 원상회복을 할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보증금으로 우선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하는 철거 · 원상회복에 관한 확인서를 통하여 철거 ·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며, 그로부터 30일 이내 전 항에 의하여 정산되고 남은 보증금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반환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영업양도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양수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업무의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해지 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물품의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공급받은 물품의 일부를 반품할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 표의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뽕도리신]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 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용역,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귀하는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짬뽕, 짜장, 만두등 면를 주재료로 하는 중국음식류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1차 : 구두 경고 2차 : 서면 시정조치 3차 :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해지	당사가 지정하는 품목의 세부내역은 가맹계약체결시 별도로 제공해드리며

		신상품 개발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 이외의 품목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지정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거래상대방(고객)	제한받는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단 당사가 인정하는 인근 "뽕도리신" 가맹점사업자의 물품 부족시 는 제외)	당사가 지정한 상품 · 용역 및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제한된 거래상대방에게 무상지원 공급 및 판매 금지	1차 : 구두 경고 2차 : 1차 서면 시정조치 3차 : 물품공급 중단 4차 : 2차 서면 시정조치 5차 : 가맹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에게 서면을 통해 통지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 귀하는 당사가 제시한 권장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권장가격은 당사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가격이며, 자세한 내역은 영업개시시,주문시,공급시 별도로 제공되며 시장 및 경제환경에 따라 권장가격과 제품이 추가 또는 변경될수 있습니다.
- ※ 귀하가 당사가 제시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당사에 문서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로 개설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짬뽕, 짜장, 만두등 면를 주재료로 하는 중국음식류	(주)디알오에프신	해당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1.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단 특수상권(백화점,마트,시장,지하상가,공항,호텔등)은	
	거리제한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가맹계약시 지도상에 영업지역 별도
2.	영업지역을 귀하와 협의후 지도상에 표시하여 가맹계약서	가정계약시 시도성에 성립시역 필도 표시하여 제공
	에 첨부할 경우 1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시하여 제공
3.	ON-LINE 및 앱등 IT를 통한 배달영업에는 1번의 영업지역	
	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가맹계약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햡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 조 정 절 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건축,재개발,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 하는 경우. 해당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사유 발생 → 당사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사업자의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시역 면성(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뽕도리신』의**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 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 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 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 고 있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 해당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전 사업년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국	¦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	ਨੋ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가맹점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전 사업년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 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뽕도리신**』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2]년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재계약기간은 갱신일로부터 만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 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 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 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사유

「가맹사업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가맹사업법」상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정당한 계약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계약조문
1.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 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다.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9조제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로 그 사유 및 절차와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1 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상호 각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당사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일반해지 사유	관련계약조항
1. '가맹점사업자가 아래 의 "7일전 서면예고 후 미 시정시 물품공급 중단 사유" 와 즉시물품공급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 더 이상 신뢰에 의한 가맹사업거래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가. 가맹점사업자가 개점점 납부할 가맹금등의 지급의무을 이행하지 않은 경	
우 나. 그밖의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개점이 연기되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제35조제2항
아니하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7.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본부를 양도하는 경우 8.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공급 및 경영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9.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신의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당사가 정하는 물류공급 중단 사유

7일 전 서면 예고 후 미 시정 시 물품공급 중단 사유

- 1.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 2.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표시의 규정을 위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경우
- 4.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5.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필수 교육, 경영지도 등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이수하지 않는 경우
- 6.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7. 가맹점사업자가 경업을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을 통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타인에게 유출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높은 행위를 하는 경우
- 8. 가맹점사업자가 물품대금, 로열티, 광고·판촉비 등의 대금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하거나 가맹점사 업자의 채무가 보증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 9. 가맹점사업자가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10.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

을 3개월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 우

- 11. 가맹점사업자가 노후 된 점포설비의 교체 · 보수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1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1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임의로 판매상품을 변경·추가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상품을 취급 하지 아니하는 경우
- 1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자점매입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 15.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1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각종 매뉴얼 기준에 따른 관리 기준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하거나 당사의 가맹점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1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18.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1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점포관리 업무를 5일 이상 방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20.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즉시 물품 공급 중단 사유

- 1. 가맹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처리 되는 경우
- 3. 가맹점사업자가 강제집행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당하는 경우
- 4.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물품공급을 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5.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3)항의 즉시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즉시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있습니다

즉시해지 사유	관련계 약조항
1.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귀하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어 지급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가맹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5조 제3항
4.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35조 제4항
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 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6. 귀하가 가맹계약서의 규정내용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 제5항
7. 귀하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연속하여 7일 이상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계약기간 중 조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귀하와 상호 합의하에 계약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가맹계약서의 효력 발생 후 양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 하에 기명날인 있는 서면으로 추가 작성된 문서는 본 계약의 추가 부분으로써 그 효력의 발생을 인정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귀하의 상속인이 가맹점 운영권을 상속하려면 당사에 사전 서면으로 그사실을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가능시 필요한 절차
양도	승인 후 가능 (단 가맹점사업자 가 영업개시후 6개월이 경과한후 가능)	가맹점운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 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양수인과 가맹본부 양도 양수 계약 또는 신규 가맹계약 체결→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가맹금 입금→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상속	승인 후 가능	가맹점운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계의사 통지→당사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상속인과 가맹본부와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 이전 계약체결→교육비 부담 및 개점 전 교육 이수→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 양도양수 시 가맹계약 외 기타 부동산조건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대리행사, 위탁등

☞ 귀하가 직접 가맹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의 승인 후 대리 및 위탁으로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대리 및 위탁경영	승인 후 가능	지정한 범위 내의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대리경영 신청 →당사 검토(대리인 및 수탁자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 인시 대리 경영

※ 당사가 승인하는 대리 및 위탁의 조건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합니다. 또한, 영업 중 당사 가 지정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 개점 전 교육비는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가맹점 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또는 계약종료후 1년간 귀하가 [뽕도리신]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짬뽕, 짜장, 만두등 면를 주재료로 하는 중국음식류	당사는 경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아래표와 같이 운영하고 않습니다.

권장 영업시간	권장 영업일수	비고
24시간	연중무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와 협의후 휴무가능)	연속하여 7일 이상 무단 휴업 불가

- ☞ 「가맹사업법」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의 수 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방문 또는 유·무선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丁世	9T 94	본부부담	가맹점부담	군급 결사	미끄
	상품광고	총 광고비의 20%	총 광고비의 80%	광고기획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총 광고비의 50%	총 광고비의 50%	→가맹점사업자 분담분 산정 →1개월 전 분담금통지서 발송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가맹점 모집광고	총 광고비의 100%	미부담	· 군급급증시시 글등 →수령 후 7일이내 지급	
	개별 판촉	미부담	총 판촉비의 100%	판촉기획 →가맹점사업자	해당
판촉 행사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상호협의전	분 분 분 분 분 분 수 차 호협의하여 결정 분 담금 → 수 령 후		가맹점사업자 가 부담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광고전체행사시 가맹점사업자의 과반수이상 참여에 동의할 경우 미동의 가맹점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판촉활동

☞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영업표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 당사가 정하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당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직원에 의한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공동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2. 위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로서 당사의 시스템, 매뉴얼, 제조, 판매, 영업, 계약 및 점포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제3자가 인지할 경우에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법이나 노하우 및 이들이 수록된 서류,문서 기타 자료를 포함합니다.
- 3.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다음 각호의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가 자점매입의 금지 를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적발 익일부터 시정전일까지 위약금으로 하루당 금일십만원(100,000원)씩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 또는 영업중단하거나 『**뽕도리신**』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영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영업기간중의 매출액을 월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3개월간의 평균 월매출액으로 합니다.
 - ※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월 매출액에 해당하는 상표사용료(월 로열티) * 계약기간의 미지급 잔 여 월수 = 위약금
- 3.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입을 계약의 잔존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의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매장 운영기간이 1년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매장운영기간 동안 당사가 공급한 물품등의 월평균 공급액으로 계산한다.

직전 1 년간 가맹본부가 공급한 물품등의 월평균공급액 X 0.02(2%) X 계약잔여개월수

- 4.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비밀유지 의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금오천만원(\\(\overline{\pm}\)50,000,000)를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의 영업비밀를 이용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거나 당사와 동일 또는 유사업종으로 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 당사에 오천만원(\\(\overline{\pm}\)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종료이후의 동일장소 또는 다른 장소에서 경업금지의무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 5.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1일 금이십만원(\(\)200,000**원-부 가세 별도)씩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주재료를 제조, 판매하거나 당사와의 계약된 정책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당사에 위약 보로 금 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적발 익일부터 시정전일까지 위약금으로 매일당금 일십만원(₩100.000)씩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 7.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가 배상하며 가맹점사업자는 발생한 손해액 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8.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와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실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할 때 까지 필요한 절차 및 기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99㎡(약30평) 기준 / 당사 전체 시공 시	약 4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 담당자 배정	D-40(1일)	
사업설명 및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설명	D-39(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조언	D-25~38(14일)	
최종협의	- 임대차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제공	D-24(1일)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D-22-23(2일)	
점포 실측 및 설계	- 인테리어, 간판, 내부설비 등 시공비 산출 - 시공 계약 체결	D-18~21(4일)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장 참조
각종 공사	- 인테리어 시공 - 간판 시공 - 내부설비 시공 -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육완료) - 각종가구,비품등 설치	D-3~17(15일)	
개점준비마무리	- 공사 완료 - 초도물품 입고	D-1-2(2일)	
개점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 개설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가맹 상담, 점포 선정, 임대차 계약, 가맹계약 체결 등의 소요시간과 매장의 규모 및 공사 일정, 인허가 일정 등으로 인해 그 기간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가맹거래나 변호사를 제외하고 귀

하께서 선택하신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 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가맹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1) 본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당사와 귀하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가맹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취지 기타 상 관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 전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당사와 귀하의 협의에 의하여 전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규정에 따름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 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 점포의 시설,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 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비용 항목	 ○ 간판 교체 비용 ○ 인테리어공사 비용 (장비, 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 공사에 소요되는 일제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비용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 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 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 양도 포함) 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등 내용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 등을 하지 않으나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에 일부을 지원할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귀하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교육내용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 교육	10일	3,300	최초가맹금에 포함
보수교육		별도책정	가맹점사업자 부담
수시교육	별도공지	무료 또는 별도책정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부담
특별교육		별도책정	가맹점사업저 부담

※ 교육일정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가 개점전교육기간 동안 제조기 술등의 내용을완전히 습득하지 못하여 영업개시을 함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하는 경우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직원 모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 귀하는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해당사항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직전년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해당사항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바로전 사업년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사항없음

	바랍니다.	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정보공개서 주요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첨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개 점포 가맹점사업자 현황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 사업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개 점포현황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년.월.일 : 20 년 월 일

정보공개서 제공자 : "(주)디알오에프"

대표 김 무창 (인,서명)

정보공개서 수령자 : "뽕도리신" (점)

대표 (인,서명)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수령 확인서

1. 제공받	위(기	맹시	업법	제 :	7 조)
--------	-----	----	----	-----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번호	지역	가맹점명(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 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점 현황 제공일 : **20** 년 월 일

가맹점 현황 제공자 : "(주)디알오에프"

대표 김 무창 (인)

가맹점 현황 수령자 : "뽕도리신" (점)

대표 (인)

비밀유지확약서

본인은 아래와 같이 귀사의 가맹사업관련 서류 및 자료를 수령함에 있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당 가맹사업을 위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무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출, 복사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본 가맹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귀사에게 아래의 가맹사업 관련서류를 신속히 반환 할 것를 확약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를 질 것을 확약 합니다.

- 아 래 -

- 1. 정보공개서
- 2. 가맹계약서
- 3.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사업 관련서류 수령일자 : 20 년 월 일

가맹사업 관련서류 수 령 자 :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 번호:

주 소:

가 맹 본 부 (주)디알오에프 대 표 김 무 창 귀하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10-8485-8482) 또는 자문가맹거래사(010-3740-6776)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법」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 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 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 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